

##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(안) 검토보고서

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(안) 은 2001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고,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, 2001년 9월 29일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류키로 의결한바 있어 이번 제52회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조례안임.

### 1. 제안 이유

-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.면.동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,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함

### 2. 주요 골자

- 자치센터와 위원회 운영 원칙을 정함(안 제3조)
- 자치센터는 읍.면.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, 명칭을 읍.면.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함  
(안 제4조)
-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정함  
(안 제5조)
- 시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.면.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함 (제6조 제1항)
- 자치센터 운영을 읍.면.동장이 하도록 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-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,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)
- 주민은 시설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 의무, 사용료 등을 납부 할 의무를 지도록 함(안 제11조)

-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함.  
(안 제15조)
-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,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며, 위원장,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도록 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
-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
(안 제21조)

### 3.관련 법적 근거

- 행정자치부 2단계 읍.면.동 기능전환 추진지침

### 4.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,면,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,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있었는바, 운영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는 현재 읍,면,동의 업무를 감안해 볼 때 인력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다음과 같이 조문 정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안제5조 제1항에서 “자치센터는…… 수행하여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” 라고 하였는바, 입법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, “예시하면”으로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은 입법내용 표현의 명료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함.

#### 〈수정의견〉

“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, 복지, 편익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”

- 제10조 제2항에서 “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.면.동장과 위원회의 협의 하에 정한다”로 하고 있는데, 징수에 대한 주체가 불 분명 하므로 “읍.면.동장과”를 “읍.면.동장 이”로, “위원회의 협의”를 “위원회와 협의”로 함이 타당하여 검토가 필요 함.
- 부칙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에서 읍·면·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·면·동에 대하여는 읍·면·동 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, 읍·면·동 실정으로 볼 때 읍·면·동 개발자문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(안)부칙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